

종합계약 표준협정서 (공동집행방식)

제1조 (목적) 이 협정서의 목적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의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“2”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·물품·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·물품·용역의 계획, 발주, 입찰, 계약체결, 감독 및 준공검사,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.

1. 사업명 : 「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및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」 조성 사업

2. 사업기간 : 2018. 9. ~ 2019. 준공 시까지

3. 사업장의 위치 :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길 19 (5,426.30m²)

4. 사업의 총 금액 : 금 4,770,000,000원

- (재)서울디자인재단 : 금 2,780,000,000원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: 금 1,990,000,000원

※ 양기관 총괄 예산으로 '용역 및 공사금액'은 사업 진행 시 변경 될 수 있음

5. 사업의 종합설계서 : 제안요청서의 “과업내용” 참조

제2조 (협의체의 구성) ① 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의 명칭, 사업지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
1. 명칭 : 「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및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」 조성사업 협의체

2. 주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

②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재)서울디자인재단 (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)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(문화진흥과)

③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(재)서울디자인재단으로 한다.

제3조 (책임) ① 조성사업의 ‘공사·물품·용역’ 입찰의 실시,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
② 협의체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써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.

제4조 (감독 및 검사) ① 위 조성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대표기관이 협의체
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행한다.

② 협의체 관련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독관 및 검사관을 각각 임명하여
사업장에 파견하고 해당 관련기관의 고유기술과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
지도록 서로 협조한다.

제5조 (보증금의 부과 등) ①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
하고 이를 수납·보관한다.

② 대표 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
하자보수보증금은 협의체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
한다.

제6조 (대가지급) ① 위 조성사업에 대한 선급금·대가 등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
의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각자의 분담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한다.

② 과업내용 변경 및 정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차액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
관련기관 간 사전협의를 따라 균등하게 부담·귀속·처리한다.

제7조(조성사업관리) ① 위 조성사업 진행에 따른 각종 보고회(착수·중간·최종 보고회
및 공사 보고회)의 개최시기, 장소, 횟수 등 사업관리는 협의체 관련기관 간 상호
협의를 통하여 정한다.

제8조(자료제공 및 협조) 협의체 관련기관은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
상호 성실히 제공·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하자담보책임) 협의체 관련기관이 해산한 후 해당 조성사업에 관하여 하자가
발생하는 경우에는 **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공동으로**, 공통되지 않는
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
하게 해야 한다.

제10조(효력기간) 이 협정서는 협의체 관련기관의 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조성사업을
완료함으로써 종결된다. 다만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
조성사업과 관련한 권리·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.

제11조(기밀준수 의무) 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체 관련 기관 간 협의·동의 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. 단 법령 또는 재판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조성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된 자료는 해당 기관이 회수·확인해야 한다.

제12조(협정서의 해석) 이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8년 9 월 일

대표기관 (재)서울디자인재단(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)

대표이사 최 경 란 (인)

관련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(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)

구청장 유 동 균 (인)